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16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이준석 · 이주영 · 천하람
김도읍 · 송언석 · 김재섭
이달희 · 김상훈 · 박성민
박준태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구축·관리”를 “구축·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이하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라 한다)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센터(이하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
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 데이터
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
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
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제6항까지에서--

-----.